

어났습니다. 그리고 停會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贊反討論이 아니고 反對에 대한 贊成하시는 분 일어나는 表決이 지금 바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要請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瑑會 아까도 제가 諒解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事案이 상당히 市民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이 여러 議員님들께서 산만하게 왔다갔다 하시고 이 表決에서 이 중대한 일을 이것이 상당히 이 時期를 놓치면 여러 가지 民願이 야기된다고 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誤謬가 없는 會議을 進行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諒解해 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당시의 在席議員과 現在 在席議員과의 差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다시 이 保留案에 대해서 贊成 反對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께서는 諒解해 주시고 議長인 저의 간곡한 말씀을 이것을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補充說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지금 金亨根議員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保留申請에 대해서 贊反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補充說明하실 분들이 金錫浩議員과 金孝善議員 두 분이 내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님, 贊反에 앞서서 제가……」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아까도 이 問題는 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입니다. 諒解해 주세요.

그러면 崔相燮議員의 保留案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保留를 反對하시는 議員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集計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90名, 贊成 7名, 反對 71名, 棄權 12名으로써 保留하자는 動議는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서울特別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은 保留하자는 動議가 否決되었으므로 同 條例案에 대해서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贊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通過 贊成하시는 분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身上發言 하나 申請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91名 中 贊成 77名, 反對 4名, 棄權 10名, 서울特別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 5 조(구성)의 제 2 항 중 “부시장”을 “주택과장”로 한다.

안 제 6 조(기능)제 1 호의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 5 호,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건축물(주거용건축물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심의”로 하고,

<p>제6호 “11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관심의” 및 제7호 “기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신설한다.</p> <p>안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의 제1항 중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등”으로 한다,</p> <p>안 제1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제1항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으로 하며, 제2항에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p> <p>안 제1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4호 단서중 “구청장이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로 한다.</p> <p>안 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6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9호단서중 “정부와 농·축·수협에서 운영하는 창고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로 하고, 제12호 “동물관련시설(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을</p>	<p>신설한다.</p> <p>안 제2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삭제한다.</p> <p>안 제2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삭제한다.</p> <p>안 제2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5호에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12호에 “의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신설한다.</p> <p>안 제2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제27조로 하고 제8호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과 제9호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을 삭제하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한다.</p> <p>안 제30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제28조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며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한다.</p> <p>안 제31조(높이제한 완화구역)를 제29조로 하고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를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제1호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로 하고, 제2호는 “대지둘레의 2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 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p>
--	---

<p>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이하”로 하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p> <p>안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제30조로 하고 제1호 가목중 “4미터초과하는 부분은 2미터이상”을 4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로 하고, 제2호 가목중 “수평거리의 2배이하”를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되,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하며, 제2호 나목 “주거용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거용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를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로 한다.</p> <p>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의 제2항제3호 중 “조경·벤치·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등”을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등”으로 한다,</p> <p>부 칙</p> <p>안 제 5 조(건폐율·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의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p> <p>안 제 6 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3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중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1993.5.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p> <p>안 제 7 조(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건축법 개정(’91.5.31. 법률 제 4381호)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자치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p> <p>안 제 6 조 및 제 7 조를 제 8 조 및 제 9 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 3 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의 범위는 종전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물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②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나. 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text{배수} = \frac{\text{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text{당해 대지면적}}$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으로
---	--